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

1. 코로나-19 대응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.
2. 관련
 - 가. 제1차 신종변이대응 TF회의('21.12.1)
 - 가. 제7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('21.12.1)
 - 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26623호('21.12.1)
3. 위 호 관련, 격리면제서 발급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등 아래와 같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요 변경사항

- **(격리면제 발급기준 일원화)**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('21.12.2~)
 - (해외접종 격리면제서) 기준 적용 및 발급 일시중지('21.12.2~) 및 기 발급된 격리면제서 중 인도적목적(직계가족방문)의 면제서 효력중단('21.12.3~)
 - * 발급이 진행중인 건은 일괄 반려처리
 - (미접종 격리면제서)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및 발급 일시중지('21.12.2~)
 - * 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이 진행중인 건은 일괄 반려처리
 - (강화된 발급기준의 격리면제서)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('21.12.2~)
 - (우대국가 혜택 중지) 교류가능국가, 신속통로국가도 동일하게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('21.12.2~)
- **(격리면제 대상 축소)**
 - (학술·공익목적)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행사의 부수행사 참여인력, 기타 공익적 목적 사유를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제외
 - (공무국외 출장) 공무국외출장의 수행인력에 대한 격리면제는 '공무원'으로 한정

- 격리면제서 기 발급자에 대한 조치사항 :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사태 시급성을 감안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자 중 불요불급한 '인도적목적(직계가족 방문)*'에 대하여 격리면제 효력을 중단('21.12.3~)

* 인도적목적 중 장례식참석사유는 격리면제 가능

